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31 선고 2017가단9750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 1. 유한회사 A(변경전: 유한회사 B)

2. C

3. D

변론 종결 2018. 5. 3.

판결 선고 2018. 5. 3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28.부터 2017. 10. 27.까지는 연 6%, 2017. 10. 28.부터, 피고 C은 2017. 11. 23.까지 연 9%, 2017. 11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, 피고 D은 2017. 11. 26.까지 연 9%, 2017. 11. 27.부터 2017. 12. 29.까지 연 12%, 2017. 12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, 피고 유한회사 A는 2017. 11. 26.까지 연 9%, 2017. 11. 27.부터 2018. 3. 21.까지 연 12%, 2018. 3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28.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A(상호 변경전: 유한회사 B, 이하 '피고 A'라 한다)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, 보험기간 2013. 3. 9.부터 2013. 12. 31.까지, 보험가입금액 50,000,000원으로 하여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 피고 C, D은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지급보증보험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피보험자와의 주계약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,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.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이다.

다.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17. 9. 27.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위 보증보험금으로 5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원고와 피고 A 사이: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, 원고와 피고 C 사이: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원고와 피고 D 사이: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증보험금 50,000,000원 및

이에 대하여 보증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. 9. 28.부터 30일이 되는 2017. 10. 27.까지는
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6%, 피고 C은 2017. 10. 28.부터 피고 C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
기록상 명백한 2017. 11. 23.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9%, 2017. 11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
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15%, 피고 D은 2017. 10. 28.부터 보증보험금 지급
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2017. 11. 26.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9%, 그 다음날인 2017. 11.
27.부터 피고 D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. 12. 29.까지
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%, 2017. 12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
연 15%, 피고 A는 2017. 10. 28.부터 2017. 11. 26.까지 연 9%, 2017. 11. 27.부터 피고 A에
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. 3. 21.까지 연 12%, 2018. 3. 22.부터 다 갚는
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원고는 지급한 보증보험금 50,000,000원에 대하여 2017. 9. 28.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
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, 피고 A가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보험계약 당시
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연 12%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
및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
아니한다(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
60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가
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)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
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영풍